

회원 관리 규정(개정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단체회원은 최소 5명 이상의 본 협회 등록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클럽 및 교육기관)를 말한다.

제3조(단체회원의 정의 및 조건)

1) 단체회원은 정관 제7조 2항에 의거 클럽과 교육기관으로 구분되며, 협회 등록 회원이 최소 5명 이상인 단체로,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클럽은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를 사랑하고 이를 이용해 비행을 하는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일정한 규칙과 규범에 의해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를 말한다.
- ② 교육기관은 협회가 별도의 규정에 의거 인정하는 교육장(활공장 및 훈련장)에서 완벽한 안전 교육체계, 비행체계 및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새로운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인구를 양성하는 기능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2) 본 협회의 소속 단체는 각 각의 기능에 따라 다음의 필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클럽은 협회 규정 제3호에 의거한 조종자(Pilot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회원들로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교육기관은 협회 규정 제3호에 의거한 연습조종자(Student Pilot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회원들로 그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은 그 장이나 교육기관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협회 규정 제3호에 의거한 지도조종자(Instructor) 자격을 소지한 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도조종사가 1인일 경우 2명의 전문조종사가 지도 조종사의 통제하에 이륙장을 운영할 수 있다. (2012.12.13. 개정)

제4조(회원 등록 구분)

본 회의 회원 등록은 신규회원의 (신규가입비와 년회비 납부) 등록과 기존회원의 재등록 (년회비 납부)로 구분한다.

제5조(회원회비)

1) 회원회비는 입회비 및 년회비로 구분하며, 정관 제36조에 의거 각 회원의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개인회원 : 개인회원은 협회에 최초 가입시 회비를 (가입비10,000원+년회비20,000원) 30,000원으로 정하며, 매년 년회비를 20,000원으로 한다.
- ② 학생회원 : 학생회원 회비는 (기존회원의 회비의 50% 절감) 최초가입시 15,000원으로 정하며, 매년 년회비는 10,000원으로 정한다.
- ③ 단체회원 : 단체회원중 클럽은 신규 가입시 회비를 100,000원으로 정하며, 매년 년회비를 60,000원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경우 신규가입시 200,000원으로 정하며, 매년 년회비를 100,000원으로 정한다. 또한 학생단체의 경우(기존단체의 회비의 50% 절감) 신규 가입시 회비를 20,000원으로 정하고, 매년 년회비를 10,000원으로 정한다.(2013년 1분기 이사회 개정)

2) 회비는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년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협회는 회비의 효율적인 징수 및 안정적인 협회 운영을 위하여 갱신 회원의 회비 거수일을 매월 1월 10일을 기준하여 일괄 징수하도록 하며, 유효기간이 남은 회원의 경우 회비의 1/100 을 적용하여 잔여기간 회비를 상계한다. 단, 신규 회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원의 등록절차)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본 회의 회원 가입 신청을 하면된다.

- 1) 개인회원(정회원, 준회원)의 신규등록은 회원등록신청서[별표1]를 제출하고 및 입회비를 납부하여 가입한다.
- 2) 단체회원은 단체회원(클럽/교육기관) 가입신청서[별표2-1과 첨부서류, 별표2-2, 별표2-3]와 연간 활동계획서, 단체소개서 및 입회비를 납부하여 가입한다.
- 3) 기존 회원은 년 회비의 납부로서 회원등록을 대신한다.

단, 개인 및 단체의 신상에 변화가 있을시 본 회에 변경 사항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다.

제7조(단체의 인정)

소정의 절차에 의해 가입신청된 단체회원은 정관 제28조 제6항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로 단체회원 가입 여부를 인정받는다.

제8조(회원 특전)

본 회에 가입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받을 수 있으며, 협회는 필요한 경우 기본 특전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실 소요 경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 신규 개인회원

기본 특전 품목

- ① 회원증 1매
- ② 회지(지부를 통해서 배포)
- ③ 멤버쉽카드(협회 회원증 자격증 기능 부가 회원의 선택 필수 사항) 1매
- ④ 자영업을 하거나 홍보가 요청되는 직업을 가진 경우 협회 홈페이지 및 회지를 통한 홍보지원
- ⑤ 비행수첩

추가 특전 품목(협회홈페이지 및 회지를 통해 홍보)

- ① 회지(개인 구독 희망시 우편료 별도 납입)
- ②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관련 책자
- ③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관련 Video Tape
- ④ 협회 기념 T-Shirts
- ⑤ 협회 기념 점퍼
- ⑥ 기타 협회에서 제작한 기념품등

단, 준회원의 경우 회원증과 멤버쉽카드만 지급한다.

2) 기존 개인회원

회원증 및 유효기간이 명시되었을 경우 조종사 자격증을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단, 소모품의 소정의 수수료를 납입하고 재교부 받을 수 있다.

3) 신규 단체회원

- ① 단체(클럽/교육기관) 등록증 1부: [별표3]
- ② 단체장 인준서 1부: [별표4]
- ③ 대의원 위촉장 1부: [별표5]
- ④ 단체 명패 1개: [별표6]

4) 기존 단체회원 : 기존 단체회원의 경우 변동 사항 발생시 해당 내용을 3)항에 준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실 경비를 부담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 제10조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체회원의 경우 정관의 의무외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회원들의 안전한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총회 의결사항, 행글라이딩인 및 패러글라이딩인의 선서, 안전수칙 및 비행수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
- 2) 소속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소속 회원과 협회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할 의무.
- 3)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보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공동 대처해야 할 의무
- 4) 기타 행글라이딩 및 패러글라이딩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 제9조에 의한 권리를 갖는다. 단, 단체회원은 정관의 권리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본 협회 규정에 의거 각 단체에게 위임된 사업 및 권한
- 2) 본 협회가 인정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에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3) 단체회원중 교육기관은 신규 회원의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제한)

협회는 회원에게 필요시 그 위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회원은 정관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및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협회 해당 위원회의 조사 보고, 상벌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로 해당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같이 징계 할 수 있다.

- ① 권고
- ② 경고
- ③ 자격정지
- ④ 단체회원 자격 취소

제13조(이의신청)

본 규정 제10조에 의해 징계 조치를 받은 단체는 조치일 기준 15일 이내에 단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유효기간)

회원등록의 유효기간은 제10조에 의거 매 1년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제3조 제2항 2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1992년 1월 24일 제 정

1993년 9월 1일 제1차 개정

1994년 5월 9일 제2차 개정

1997년 7월 1일 제3차 개정

1999년 1월 23일 제4차 개정
2000년 2월 26일 제5차 개정
2002년 3월 9일 제6차 개정
2012년 12월 13일 제7차 개정

[별표1]

회원 가입 신청서

| | | | | | |
|--------|-------------------|----|--|------|---|
| 성명 | 한글: 한문: 영문: | | | | 사진 (반명함판) 1매부착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 혈액형 | |
| 현주소 | | | | 전화 | |
| 직장 | | | | 전화 | |
| 소속클럽 | | | | 전화 | |
| 소유기종 | 제작사 | | | 활동종목 | <input type="checkbox"/> HG <input type="checkbox"/> PG <input type="checkbox"/> H&PG |
| 강습기관 | | | | 경력 | 개월 일 |
| 가입보험 | | | | | |

상기 본인은 귀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 가맹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국제항공연맹(F.A.I) 규정 및 귀 협회의 회칙과 제반규정을 준수함은 물론이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회원활동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반사고나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반드시 가입 하겠으며, 귀 협회에는 어떠한 피해도 전가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회원가 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본인 성명 (인) [보호자 (인)]
(※ 18세 미만인 경우)

추천인 성명 (인)
(클럽장)

사단법인 대한민국 항공회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단체(클럽/교육기관) 등록 신청서

회장

| | | | | | |
|--|------|------------|--|-----------|-------|
| 단체명 | | 활동종목 | <input type="checkbox"/> HG <input type="checkbox"/> PG <input type="checkbox"/> H&PG | 창립일 | 년 월 일 |
| 소재지 | 주소 | | | | |
| | 연락처 | T: | 무전기: | FAX: | |
| 대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자격증등급/번호 | | |
| | 전화번호 | T: | H/P: | B/B: | FAX: |
| 회원 | 총원 | | 자격증소지자 | 연습조종사(SP) | 명 |
| | 정회원 | 남: 명, 여: 명 | | 조종자(P) | 명 |
| | 준회원 | 남: 명, 여: 명 | | 지도조종자(IP) | 명 |
|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 자격증(교육기관의 경우 지도조종자) 사본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보유장비 목록표 1부 4. 년간활동계획 1부 5. 보유(또는 활용)시설 개요 및 목록 1부(교육기관에 한함) 6. 교육 교범 및 교육 프로그램 1부(교육기관에 한함) | | | | | |

본 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향공회 가맹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에 단체등록을 함에 있어, 항공법, 협회의 회칙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안전비행에 최선을 다하며, 위규 내용 발생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단체 대표 () (인)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향공회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별표2-3]

대표자서명감

• 단 체 명 :

| 기 간 | 대 표 자 | 대 리 인 |
|-----|----------|----------|
| 년 월 | 성 명 | 성 명 |
| | 인감 또는 서명 | 인감 또는 서명 |
| 년 월 | | |
| | | |
| 년 월 | 성 명 | 성 명 |
| | 인감 또는 서명 | 인감 또는 서명 |
| 년 월 | | |
| | | |
| 년 월 | 성 명 | 성 명 |
| | 인감 또는 서명 | 인감 또는 서명 |
| 년 월 | | |
| | | |
| 년 월 | 성 명 | 성 명 |
| | 인감 또는 서명 | 인감 또는 서명 |
| 년 월 | | |
| | | |

[별표3]

대한행패러협 제2000- 호

단체(클럽/교육기관)등록증

단체명:

등록번호: 대한행패러협 제 - 호

활동종목: 행글라이더 or 패러글라이더

최초등록일: 20 년 월 일



위의 단체는 본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정관 제7조에 의하여 단체회원(클럽)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2000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의 항공회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별표4]

대한항공패러협 제 0-1 호

인 증 서

단 체 명: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위의 분은 본 대한항공패러글라이딩협회
정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회
산하 단체(클럽/교육기관)장으로 취임함을 인
증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항공회
대한항공패러글라이딩협회